제29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
〔2022. 11. 23. 10:00〕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2. 11. 23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2년 11월 23일
전문위원 장 석 현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22 - 104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7일

라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1일

2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위원회의 기능(안 제1조~제2조)

나. 위원의 구성, 임기, 해촉(안 제3조~제5조)

다. 위원회의 운영(안 제6조)

라. 의견 청취 등(안 제7조)

마. 수당 및 예산 지원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(붙임 1)

다. 협의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 결과(2022. 9. 30. ~ 2022. 10. 20.)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: 해당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○ 민선 8기 구정 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○ **안 제1조**에서는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함을 본 조례안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
○ **안 제2조**에서는 구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자문·제안, 구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또는 행정 개선에 관한 건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

○ **안 제3조부터 제4조**까지는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, 구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등으로 2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함

○ **안 제6조**에서는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
○ **안 제7조**에서는 위원회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,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

○ **안 제8조**는 구에서는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함

다. 종합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선8기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전문가가 고루 참여하여 구정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의견 수렴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
○ 아울러,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사무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설치이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

붙임1 **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, 위촉장 제작, 회의 개최 비용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4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강서구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(담당: 행정7급 김현봉)
연락처	(02)2600-6026

붙임2 **관련 법령**

❑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**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**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**위원회 등을 말한다.** 이하 같다)을 **설치·운영할 수 있다.**